

- 가. 고장 · 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 · 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
 - 나.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
 - 2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 · 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 · 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,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
 - 가. 고장 · 사고차량이 주 · 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: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
 - 1)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 · 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 · 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
 - 2) 주 · 정차 가능 구역에서 1)에 따른 운임 · 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 · 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
 - 나. 고장 · 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 · 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: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
 - 22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 · 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
 - 23.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.
 - 가.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,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
 - 나.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
 - 다. 교통사고, 차량고장 또는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시간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
 - 24.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「도로교통법」 제46조의3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
 - 25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하도록 지시하지 말 것
 - 26. 위 · 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 · 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
 - 27. 위 · 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 · 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
 - 28. 위 · 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 · 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해야 하고,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 · 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
 - 29. 위 · 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 · 탈취하는 등 위 · 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
 - 30.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 · 중량 및 부피 등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하지 않을 것
 - 31. 화물자동차 운전자(법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외한다)에게 「도로법」 제77조 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지 않을 것
 - 3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
- 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21조의2(택시 유사표시행위)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
2.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